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성주군이 건립한 체육시설 증가로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를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함.

나.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를 기존 체육시설 뿐 만 아니라 추가로 건립 및 향후 건축 필요 예상되는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 책정

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반영함.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09. 11. 19 ~ 12. 8(20일간) : 의견없음.

5. 참고사항

가.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나. 예산 관련 : 해당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를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테니스장 등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를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궁도장, 사격장 등)을 말하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하키장,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풋살구장, 수영장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명 :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	**제 명 :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관리운영 하는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테니스장 등 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
제2조 (정의) 1.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궁도장, 사격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 (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종합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하키장,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 풋살장, 수영장 등)을 말하며,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 (위탁관리)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별표 2】

생활체육시설(테니스,정구,족구장) 사용료

구분 경기장별	기준	체육행사		체육 이외의 행사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테니스장	주간 (1면당)	15,000	30,000	20,000	35,000	1면 2시간당
정구장		15,000	30,000	20,000	35,000	
족구장		15,000	30,000	20,000	35,000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량의 30% 가산.

축구장 사용료

사 용 목 적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 경기	100,000	15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
체육 경기 외	200,000	300,000	

야구장 사용료

사 용 목 적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 경기	50,000	10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
체육 경기 외	100,000	200,000	